

[별표 3] <개정 2026. 5. 28.>

비상근무의 단계별 비상근무 인원(제13조제6항 관련)

구 분	경계		1단계		2단계	
	구성	인원 (명)	구성	인원 (명)	구성	인원 (명)
방재기상본부장	예보총괄관리관	(1)	예보총괄관리관	1+(1)	예보총괄관리관	1
방재기상지원부	재해기상대응과장		재해기상대응과장		재해기상대응과장	1
	재난대응지원반	1+(1)	주무관/사무관	1+(1)	주무관/사무관	1+(1+ a)
	분석지원반	-	주무관/사무관	(1+ a)	주무관/사무관	1+(a)
방재기상상황부	총괄예보관	1	총괄예보관	1	총괄예보관	1
	상황반	5+(a)	주무관/사무관	5+(a)	주무관/사무관	5+(a)
	상황지원반	수치예보센터/국가기상위성센터/기상레이더센터 자체편성				
방재기상정책부장	예보국장	-	예보국장	-	예보국장	(1)
	정책기술반	1	주무관/사무관	1+(1)	주무관/사무관	1+(1+ a)
	행정반	-	주무관/사무관	(5)	주무관/사무관	5
총계		8+(2+ a)		9+(9+ a)		16+(3+ a)

① ()는 방재기상본부장의 상황판단에 따라 추가되는 인원을 말한다.(a는 인원수 제한 없음)

② 비상근무시간 세부 운영방법은 다음과 같다.

- 비상근무자의 최초 비상근무 응소시간이 정규 교대시각 도달 전 2시간 이내인 경우 해당 비상근무자의 비상근무는 다음 비상근무시간까지 연장하여 실시한다.
- 휴일 및 새벽(00시~06시)에는 근무시간과 상관없이 응소만으로 순번에서 제외하며 그 밖의 시간에 응소한 경우에는 정규 근무시간(평일 9시~18시) 외 2시간 이상 근무해야 순번에서 제외한다. 다만, 비상근무시간 중에 비상이 해제되었다가 같은 비상근무시간 중에 다시 비상근무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비상근무시간에 최초로 투입된 비상근무자가 재응소한다.